탄 원 서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및 선처 요청

피고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사건명	군기누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께.

저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관련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 각 구성요건과 피고인 개인의 인식·관여 정도를 신중하게 재심리하시어 범죄 성립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만일 유죄 판단을 유지하신다면 관련 경위와 양형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26일 제1심은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사 소속 요원 약 40명의 인적 사항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 측에 전달된 사건으로, 제1심은 그 명단의 군사기밀성 및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요원의 안전과 군사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해당 정보와 각 행위자의 책임을 정밀하게 가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전달된 명단의 구체적인 성격과 기밀성을 면밀히 심리해 주십시오.

인적 사항이 공식 비밀로 지정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정보가 관리되어 온 방식,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식별될 수 있는 내용, 외부 공개 시 군사상 위해 발생 가능성, 실제 전달된 자료의 범위를 종합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심의 기밀성 인정 근거를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으로 검증하되,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비공개 심리 원칙 역시 충분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명단 작성·전달의 경위와 문 전 사령관의 인식을 구분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 해당 명단이 어떠한 지시·보고 경로를 거쳐 작성되고 전달되었는지, 피고인이 전달 대상과 사용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조직상 책임의 위치와 실제 정보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실행·고의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통신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대조해 개인별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탄원 이유 (계속)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별도의 요건별로 검토해 주십시오.

명단에 포함된 각 정보가 개인 식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개인정보의 처리·제공 주체와 제공 행위, 법령상 근거의 유무, 문 전 사령관이 그 사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명확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서로 구분되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상급자의 지시와 개인 책임을 함께 살펴 양형에 반영해 주십시오.

제1심이 상급자 지시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시의 발단,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는지 여부, 다른 관련자와 비교한 실제 영향력, 당시 선택 가능성과 판단 과정은 책임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군에 복무한 사정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정상도 빠짐없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기밀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이 탄원은 유출의 위험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엄정한 판단과 형사재판의 개별책임 원칙이 함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범위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해 주십시오.

부디 문상호 전 사령관에 관하여 구성요건이나 고의의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유죄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건 경위와 책임의 경중을 세심히 참작하여 관대한 형을 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